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595
----------	------

2026년 4월 21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5년 3월 30일
- 다. 회부일 : 2026년 3월 31일
- 라. 상정일 :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6년 4월 2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

### 가. 제안이유

- 시티넷(CityNet) 의장 도시로서 2027년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정책과 도시 간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이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서울총회' 관련 시티넷 사무국과 상호 역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제안이유

### 1) 사업개요(안)

- 행사명 :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서울총회
- 행사시기 : 2027년 9~10월 중 3일간
- 행사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규모 : 300명 내외
- 참가대상 : 155개 회원 도시·기관장, 국제기구 관계자(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기타 경제·사회·행정 분야 초청 인사 등
- 주요행사 : 공식 회의(총회, 집행위원회, 국가지부·클러스터 회의), 부대행사(SDGs 도시 시상식, 지식 공유포럼), 정책 현장 견학 등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시티넷 사무국

### 2) 추진경과

- 제45차 집행위원회에서 2027년 총회 개최 후보지 의결 : '25. 10.
- '2027년 총회 서울 개최 알림 및 협조 요청' 서한문 수신(시티넷 사무국 → 서울시) : '26. 1.

### 3) 협약 개요

- 협약서명 : 서울특별시과 시티넷 사무국 간 '설립 40주년 기념 제 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양해각서
- 협약목적 :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서울시와 시티넷 사무국 간 상호 역할과 재정 협력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공식화함
- 당사자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 (공동 주관) 시티넷 사무국
- 당사자별 역할
  - 공동 협력 : 기획 및 운영체계 마련, 의제 설정 및 프로그램 구성,

- 국내외 홍보 및 참가 독려, 서울 선언문 작성, 초청장 발송 등
- 서울시 : 행사장 대관·조성, 참가자 국내 체류 지원(숙박, 식사, 교통편 등), 정책 현장 견학 기획·운영, 행사 기획·운영 예산 확보 등
- 시티넷 사무국 : 공식 회의 및 부대행사 기획 총괄, 참가자 항공료 지원, 회원 도시 등 참가 홍보, 회의자료·프로그램 자료집 작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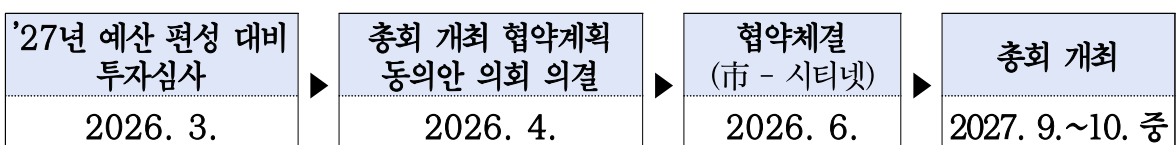
#### 4) 기대효과

- 2025년 도시경쟁력 6위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및 시티넷 회장도시(2013년~)로서의 위상 재확립
  - 글로벌 중심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현 모습을 회원 도시, 국제기구 등과 공유하고 서울 재방문과 향후 도시 간 협력 계기로 활용
- 서울의 우수정책 해외 확산 및 시정가치 글로벌 전파
  - 대표 정책 현장 방문 프로그램으로 우수정책 공유 시너지 창출
  - 주요 도시와 네트워킹을 통한 정책교류·협력 파트너십 구축

#### 5) 사업비

- 총 소요예산(안) : 1,450백만원
  - 서울시 : 1,400백만원(행사운영비 1,280, 국제부담금\* 120)
    - \* 저개발 도시별 대표자 항공료 지원 등을 위해 시티넷 사무국에 지원
  - 시티넷 자부담 : 50백만원(전담 인력, 총회·집행위 회의 진행 등)

#### 6) 추진일정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 예산조치 : 2027년 예산 편성 요구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가. 동의안 개요

- 이번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서울시가 시티넷(CityNet)<sup>1)</sup> 의장 도시로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정책과 도시 간 협력 전략 논의를 위해 2027년 하반기 총회 개최에 필요한 서울시와 시티넷 사무국 간의 상호 역할과 재정 협력 관련 양해각서<sup>2)</sup>를 체결하기 전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sup>3)</sup>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나. 총회 개최 경위와 주요 협약 내용

- 시티넷은 1987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정부 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원 도시 및 기관 간 제도개선과 기술 협력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국제단체로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함(붙임1)
- 서울시는 1989년 최초 시티넷에 가입한 이후 2013년부터 회장 도시로 활동하며 매년 사무국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집행위원회 개최 시 회장 도시 만찬(서울의 밤)을 주재하는 등 시티넷 성장과 확장에 이바지하고 있음

1) 인간 정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네트워크 (The Regional Network of Local Authorities for the Management of Human Settlements (약칭 : 시티넷(CityNet))

2) 「서울특별시」와 「인간의 정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간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양해각서

3)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 시티넷(CityNet) 개요 >

- 설립목적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정부 간 협력 및 연계 강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원 도시·기관 간 제도개선 및 기술협력 지원
- 주요활동 : 총회(4년마다 개최), 집행위원회(매년 개)
- 조직구성 : '22.9월 총회를 거쳐 선출함

구분	구 성
회장단(4)	회장(서울시), 명예회장(요코하마시), 부회장(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필리핀 마카티)
집행위원(13)	회장단(4),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랄릿푸르, 콜롬보, 덴파사르, 일로일로, 플러스 아트 센터, 국제기후개발연구소(ICDI), 인도지방자치연구소(AIILSG)
사무국	사무총장(비제이 자가나단/인도), 사무차장(CEO), 2개팀 9명

※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장단 도시, 집행위원 도시, 사무총장 등 선출

## < 역대 시티넷(CityNet) 총회 개최도시 현황 >

구분	개최지	개최일	구분	개최지	개최일
제1차	상하이(중국)	1989. 11. 4.	제6차	요코하마(일본)	2009. 9. 7.
제2차	뭄바이(인도)	1993. 11. 21.	제7차	서울(한국)*	2013. 11. 3.
제3차	요코하마(일본)	1997. 11. 22.	제8차	콜롬보(스리랑카)	2017. 11. 5.
제4차	방콕(태국)	2001. 10. 29.	제9차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2022. 9. 20.
제5차	하노이(베트남)	2005. 10. 11.	제10차	서울(한국)	2027. 9~10.(예정)

\* 시티넷 사무국 이전(요코하마 → 서울) / \*\* 코로나19로 개최 연기(2021년 → 2022년)

## < 최근 5년간 시티넷(CityNet) 사무국 운영비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6년	'25년	'24년	'23년	'22년
총 운영비	7,032	1,424	1,418	1,581	1,326	1,283
서울시 부담 (비중)	4,555 (64.8%)	854 (60.0%)	902 (63.6%)	1,100 (69.6%)	865 (65.2%)	834 (65.0%)

- 2027년 개최 예정인 제10차 시티넷 총회는 '26.1월 시티넷 사무국의 협조 요청<sup>4)</sup>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회원 도시 및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석하여 도시 간 정책교류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티넷 회장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해<sup>5)</sup> 개최하는 것임

4) CITYNET 사무총장, 2027년 제10차 시티넷(CITYNET) 총회 서울 개최 결정에 따른 협조 요청, 2026.1.30.

5)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시티넷 서울 총회 개최 기본계획, 2026.2월

- 서울시와 시티넷 사무국 간에 체결할 양해각서<sup>6)</sup>는 각 기관의 역할 분담 내용과 협력 사항, 지원금 운영, 주최 및 주관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 협력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참가자 국내 체류비, 행사장 대관 등 비용을 부담하고 시티넷 사무국은 해외 참가자 왕복 항공료, 공식 회의 및 부대행사 기획 등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붙임2, 양해각서(안))

## 다. 동의안의 타당성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sup>7)</sup>에 따라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국제교류 협력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며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sup>8)</sup>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제1호<sup>9)</sup>에 따라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1136)

6)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업무협약서(국문) (안)

7)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8)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생략)

2. 예산의 심의·확정

3. (생략)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자·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 7. (생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티넷 설립 40주년을 기념할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마목<sup>10)</sup>에 따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 동의안과 관련된 사업비(1,450백만원)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sup>11)</sup>을 승인받은 바, 심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여 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고 향후 '2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 서울시-시티넷 비용부담 사항 〉

- 총 소요예산(안) : 1,450백만원 (예비비 145백만원 제외<sup>12)</sup>)
- 서울시 : 1,400백만원(행사운영비 1,280백만원, 국제부담금\* 12백만원)
- \* 저개발 도시별 대표자 항공료 지원 등을 위해 시티넷 사무국에 지원
- 시티넷 자부담 : 50백만원(전담 인력, 총회·집행위 회의 진행 등

-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1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①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 라. (생략)
  -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11) 2026.3.31. (재정담당관-4221) 2026년 제2차(3월)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국제협력담당관)

심사결과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구체화 및 적정성 검토</li> <li>○ 스마트라이프워크와 연계하여 시행</li> <li>○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li> </ul>
-----------	---

1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2024.4., p.39.~41.

- 투자심사 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운영기준에 따라 총사업비의 10%인 예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실제 편성은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제외하고 편성할 예정임

- 또한, 시티넷 설립 40주년 기념 서울총회가 2027년 하반기에 개최 될 예정으로 현재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준비 과정에 관련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라. 종합의견

- 이번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서울시와 시티넷 사무국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사항 등을 규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번 총회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을 승인받은 바, 심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고 향후 '2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시티넷 설립 40주년 기념 서울총회는 2027년 하반기에 개최 예정으로 향후 준비 과정에서 관련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등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기 구 명 : 약칭 ‘시티넷(CityNet)’

- 정식명칭 : 인간정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네트워크  
(The Regional Network of Local Authorities for the Management of Human Settlements)

□ 설립목적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정부 간 협력 및 연계 강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원도시·기관 간 제도개선 및 기술협력 지원

□ 조직 현황

- 조 직 도



\*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 조직 구성 ※ 최근 9차 총회 선출('22. 9.)

구 분	구 성
회 장 단 ( 4 )	회장(서울시), 명예회장(요코하마시), 부회장(2)
집행위원(13)	회장단(4),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랄릿푸르, 콜롬보, 덴파사르, 일로일로, 플러스 아트 센터, 국제기후개발연구소(ICDI), 인도지방자치연구소(AIILSG)
사 무 국	사무총장, 사무차장(CEO), 2개팀 9명

※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장단 도시, 집행위원도시, 사무총장 등 선출

※ 사무차장(CEO) : 장재복(前 주 인도대사)

□ **회원 : 155개 도시기관** (정회원 102, 준회원 51, 기업회원 2)



▶ **회원 수**

- 23개 국가/지역에서 **총 155개** 회원

▶ **구성**

- 102개 정회원(아태지역 도시)

- 51개 준회원(아태 지역 외 3개 도시, 국가 단위 조직 및 개발기구 16개, NGO 25개, 교육기관 10)

□ **정 회원 : 102개 도시**

국 가	도 시 명
방글라데시 (4)	북부다카, 쿨나, 싯헛, 바리살
캄보디아 (1)	프놈펜
피지 (2)	수바시의회, 나시누의회
인도네시아(17)	덴파사, 마카사르, 반다 아체, 반둥, 반자르, 반자르baru, 보고르, 세마랑, 수라바야, 수카부미, 시도르조, 자카르타, 잠비, 메단, 타라칸, 토모혼, 쿠팡
일본 (2)	요코하마, 마츠야마
한국 (12)	서울, 인천, 부산, 수원, 서대문구,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구로구, 종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말레이시아 (6)	왈라룸포르, 페낭섬시의회, 세베랑페라이, 수방자야, 푸트라자야관리청, 쿠안탄시의회
네팔 (16)	바라트풀, 비랏나가, 비르간즈, 부트왈, 헤타우다, 카트만두, 라릿풀, 포카라, 싯다르타나가르, 탄센, 다란, 네팔군지, 고다와리, 브히마다타, 당하디, 티로타마
중국 (4)	난창, 난징, 상하이, 우한
파키스탄 (1)	수도개발국
필리핀 (19)	나가, 레가즈피, 로하스, 마카티, 만다우에, 문틴루과, 바기오, 발랑가, 산타로사, 산페르난도, 이리가, 일로일로, 칼라판, 케손, 타쿠롱, 투게가라오, 푸에르토 프린세사, 파시그, 부투안
스리랑카 (7)	콜롬보시의회, 데히왈라 라비니아산 시의회, 갈레시의회, 캔디시의회, 네곰보시의회, 스리 자야와다나푸라 코트 시의회, 모라투와 시의회
몰디브 (1)	말레시의회
태국 (1)	방콕
베트남 (5)	다낭인민위원회, 하이퐁, 하노이인민위원회, 호치민인민위원회, 후에시인민위원회
Region (4)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타오위안
합 계	102개 도시

□ **준 회 원 : 51개 기관**

항 목	국 가	도 시	기 관 명
DA	방글라데시 (1)	다카	라지드하니 운나얀 카트리파카(Rajdhani Unnayan Kartripakkha)
NGO	캐나다 (1)	브리티	빅토리아대학 아시아-태평양 센터(Centre for Asia pacific initiatives-University of Victoria)
NLO	인도 (6)	뉴델리	주택도시개발공사(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뭄바이	인도지방자치연구소(All India Institute of Local Self Government)
		구자라트	구자라트 고위급 도시 계획 위원회 High-Level Committee on Urban Planning(HLC-Gujarat)
NGO		아메다바드	아메다바드 스터디액션 그룹(Ahmedabad Study Action Group)
		구자라트	하비타트 포럼 (Habitat Forum (INHAF))
		뭄바이	단합과 자발적행동을 위한 청년단체(Youth for Unity and Voluntary Action)
NGO	인도네시아 (4)	자카르타	깨끗한 지역개발연구소(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깨끗한 칠리윙강 운동(Gerakan Ciliwung Bersih)
			환경 파트너 재단(Yayasan Dana Mitra Lingkungan)
			친환경 에너지 촉진 이니셔티브 (GrEENACC_Green Efficient Energy Acceleration)
EDU	일본 (5)	도쿄	템플 대학교 일본 캠퍼스(Temple University, Japan Campus)
		요코하마	요코하마 대학교(Yokohama City University)
NGO			요코하마
		고베	플러스아트(Plus Arts NPO)
도쿄		KDDI 재단(KDDI Foundation)	
NLO	한국 (5)	서울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
			서울연구원(The Seoul Institute)
EDU		서울디지털재단(Seoul Digital Foundation)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International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Seoul National University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NGO	중국 (3)	베이징	세계자원연구소, 중국지부(World Resources Institute, China)
			과학대중화센터 (Archicity-ASC Science Popularization Center)
		홍콩	조탄소 연수센터 (CarbonCare InnoLab)

항 목	국 가	도 시	기 관 명	
NLO	말레이시아 (1)	페낭	띵크 시티 (Think City Sdn Bhd)	
NGO	몽골 (1)	울란바타르	몽골 헬시 시티 네트워크(Healthy City Network of Mongolia)	
NLO	네팔 (8)	카트만두	도시개발기금(Town Development Fund)	
NGO		카트만두	도시 비공식 부문 서비스 센터(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포카라	레크나 상수도 및 위생 위원회(Lekhnath Small Town Water Supply & Sanitation User Committee)	
EDU		라릿폴	네팔국립지진기술협회(National Society for Earthquake Technology-Nepal)	
		카트만두	네팔 과학 기술 교육 센터(Nep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NGO	카트만두	루만티 주거지 지원단체(Lumanti Support Group for Shelter)
			고르카	UN네팔(Unification Nepal)
라릿폴		재해교육추진 사무실(Disaster education Promotion Office)		
NLO	필리핀 (4)	마카티	필리핀 도시연맹(League of Cities of the Philippines)	
EDU		파시그	지방정부학회(Local Government Academy)	
		일로일로	존 B. 락슨 재단 해양대학교(John B. Lacson Foundation Maritime University)	
NGO		마닐라	프리덤 투 빌드(Freedom to Build. Inc)	
NGO	스리랑카 (3)	갈레	인간환경연계기구(Human & Environment Links Progressive Organization)	
		갈레	갈레발전재단(Galle Development Foundation)	
		콜롬보시	(Sevanatha-Urban Resource Centre)	
NLO	태국 (2)	방콕	태국도시연맹(National Municipal League of Thailand)	
EDU		칸차나부리	마히들대학교, 칸차나부리 캠퍼스(Mahidd University, Kancharaburi Campus)	
EDU	베트남 (1)	하노이	건설 및 도시 운영자 학회(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	
EDU	Region (1)	대만	국제기후개발연구소(International Climate Development Institute)	
DA	카자흐스탄 (2)	알마티	알마티 개발 센터 (Almaty Development Centre (ADC))	
NGO		알마티	카라흐스탄 도시 포럼(Urban Forum Kazakhstan)	
OAP	포르투갈 (2)	브라가	브라가 시 (Braga Municipality)	
		마토지뉴스	마토지뉴스 시 (Matosinhos Municipality)	
	스페인 (1)	그라나다	그라나다 시의회 (Granada City Council)	
합 계	51개			

## 「서울특별시」와 「인간의 정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간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양해각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인간의 정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이하 ‘시티넷 사무국’)은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이하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총회는 아태지역 회원 도시·기관을 포함한 전 세계 도시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 해결 및 미래 도시 정책, 도시 간 협력 전략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비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2027년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시티넷 총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협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석 대상)** 총회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1. 시티넷 회원 도시 및 회원기관
2. 운영 기구(사무총장, 집행위원회, 국가지부, 클러스터) 대표
3. 자문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
4. 국내외 참가자

**제3조(협력 사항)** 양 기관은 다음을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조건은 별도로 협의한다.

1. 공동 협력
  - 가. 총회 기획 및 운영체계 마련
  - 나. 의제 설정 및 프로그램 구성
  - 다. 국내외 홍보 및 참가 독려
  - 라. 서울 선언문 작성
  - 마. 공식 회의(총회, 집행위원회, 국가지부 회의, 클러스터 회의) 및 부대행사(SDGs 도시 시상식, 개막식, 지식 공유포럼 등) 운영
  - 바. 참가자(회원 도시·기관, 관계기관) 초청장 발송
2. 서울시의 역할

- 가. 행사장 대관 및 행사 운영 총괄
- 나. 행사 기획·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 다. 공식 회의 및 부대행사 현장 설치·운영
- 라. 정책 현장 견학 기획·운영
- 마. 참여자 등록 및 현장 관리

### 3. 시티넷 사무국의 역할

- 가. 공식 회의 및 부대행사 기획 총괄
- 나. 회의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집 작성
- 다. 회원 도시 및 협력 기관 참가 홍보 및 지원
- 라. 주요 인사 초청(서울시와 협의)

**제4조(재정 협력)** 양 기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의 소요 예산을 각각 부담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 1. 서울시

- 가. 참가자 국내 체류비(숙박, 식사, 교통편 등)
- 나. 행사장 대관 및 행사 운영(행사장 설치, 운영 인력, 오·만찬 등)
- 다. 통역 서비스
- 라. 정책 현장 방문 프로그램 기획·운영

#### 2. 시티넷 사무국

- 가. 해외 참가자 왕복 항공료
- 나. 공식 회의 및 부대행사 기획
- 다. 총회 해외 홍보 및 회원 도시·기관 등 참가 독려 활동비

**제5조(지원금 운영)** 서울시는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시티넷 사무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를 제3조 및 제4조의 협력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1. 지원 대상과 범위는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다.
2. 사무국은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 서울시에 정산서와 증거자료를 공유한다.

**제6조(주최 및 주관)** 총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시티넷 사무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제7조(효력)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부터 총회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제8조(비밀 유지)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된 문서, 자료 등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되어서는 아니되며, 양 기관은 본 조항이 협약의 만료나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9조(배상 책임) 서울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사 운영 관련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단, 사무국 직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사무국이 부담한다.

제10조(변경) 본 양해각서의 내용은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를 국문 및 영문 각 2부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국문과 영문 간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본을 우선한다.

2026. .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을 대리하여

**시티넷 사무국**

---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

---

**사무총장**  
**비제이 자가나단**

#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3595
----------	------

제출년월일 : 2026년 3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시티넷(CityNet) 의장 도시로서 2027년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정책과 도시 간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함
- 나. 이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서울총회’ 관련 시티넷 사무국과 상호 역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안)

- 행사명 : 2027년 설립 40주년 기념 제10차 시티넷 서울 총회
- 행사시기 : 2027년 9~10월 중 3일간
- 행사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규모 : 300명 내외
- 참가대상 : 155개 회원 도시·기관장, 국제기구 관계자(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기타 경제·사회·행정 분야 초청 인사 등
- 주요행사 : 공식 회의(총회, 집행위원회, 국가지부·클러스터 회의), 부대 행사(SDGs 도시 시상식, 지식 공유포럼), 정책 현장 견학 등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시티넷 사무국

## 나. 추진경과

- 제45차 집행위원회에서 2027년 총회 개최 후보지 의결 : '25. 10.
- '2027년 총회 서울 개최 알림 및 협조 요청' 서한문 수신(시티넷 사무국 → 서울시) : '26. 1.

## 다. 협약 개요

- 협약서명 : 서울특별시과 시티넷 사무국 간 '설립 40주년 기념 제 10차 시티넷 총회 서울 개최' 양해각서
- 협약목적 :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서울시와 시티넷 사무국 간 상호 역할과 재정 협력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공식화함
- 당사자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 (공동 주관) 시티넷 사무국
- 당사자별 역할
  - 공동 협력 : 기획 및 운영체계 마련, 의제 설정 및 프로그램 구성, 국내외 홍보 및 참가 독려, 서울 선언문 작성, 초청장 발송 등
  - 서울시 : 행사장 대관·조성, 참가자 국내 체류 지원(숙박, 식사, 교통편 등), 정책 현장 견학 기획·운영, 행사 기획·운영 예산 확보 등
  - 시티넷 사무국 : 공식 회의 및 부대행사 기획 총괄, 참가자 항공료 지원, 회원 도시 등 참가 홍보, 회의자료·프로그램 자료집 작성 등

## 라. 기대효과

- 2025년 도시경쟁력 6위 글로벌 선도 도시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및 시티넷 회장도시(2013년~)로서의 위상 재확립
  - 글로벌 중심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현 모습을 회원 도시, 국제기구 등과 공유하고 서울 재방문과 향후 도시 간 협력 계기로 활용
- 서울의 우수정책 해외 확산 및 시정가치 글로벌 전파
  - 대표 정책 현장 방문 프로그램으로 우수정책 공유 시너지 창출
  - 주요 도시와 네트워킹을 통한 정책교류·협력 파트너십 구축

마.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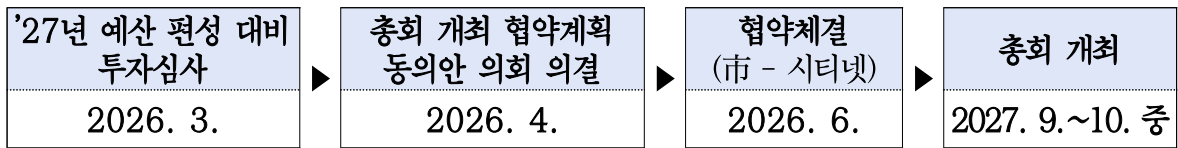
○ 총 소요예산(안) : 1,450백만원

- 서울시 : 1,400백만원(행사운영비 1,280, 국제부담금\* 120)

\* 저개발 도시별 대표자 항공료 지원 등을 위해 시티넷 사무국에 지원

- 시티넷 자부담 : 50백만원(전담 인력, 총회·집행위 회의 진행 등)

바. 추진일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의무부담  
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7년 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이다은 (☎2133-5270)

- 붙임 1. 업무협약서(국문)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